

# 동산 매매계약서

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 목적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.

## ■ 목적물의 표시

|       |  |          |  |
|-------|--|----------|--|
| 품명    |  | 제조사/모델   |  |
| 규격·사양 |  | 제조번호     |  |
| 수량    |  | 제조(등록)연월 |  |
| 보관장소  |  |          |  |

## ■ 매매대금 및 지급일정

|      |           |       | 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|--|
| 매매대금 | 금 원정 (₩ ) |       |  |
| 계약금  |           | 지급일   |  |
| 중도금  |           | 지급일   |  |
| 잔금   |           | 지급일   |  |
| 입금계좌 |           | 인도예정일 |  |

### 제 1 조 (목적)

매도인은 위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,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한다.

### 제 2 조 (대금의 지급)

매수인은 위 지급일정에 따라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.

매수인이 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할 수 있다.

### 제 3 조 (목적물의 인도)

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인도예정일까지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다.

인도에 소요되는 운송비와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4 조 (소유권의 이전 및 위험부담)

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매대금 완납과 인도가 모두 완료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.  
인도 전 발생한 멸실·훼손의 위험은 매도인이, 인도 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.  
등록이 필요한 목적물은 인도 후 지체 없이 명의이전 절차를 진행한다.

제 5 조 (하자담보책임)

매도인은 목적물이 계약 내용에 적합함을 보증한다. 다만 당사자가 현상 그대로 인도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범위를 특약 사항에 명시한다.  
매수인은 인도 후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통지한다.

제 6 조 (계약의 해제)

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 
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며,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

제 7 조 (특약사항 및 관할)

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른다.  
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  
특약사항 — 현상 인도 여부, 운송비 부담, 부속품 범위, 명의이전 비용 등을 기재하십시오.

■ 당사자

|     |        |  |      |  |
|-----|--------|--|------|--|
| 매도인 | 성명(상호) |  | 생년월일 |  |
|     | 주소     |  | 연락처  |  |
| 매수인 | 성명(상호) |  | 생년월일 |  |
|     | 주소     |  | 연락처  |  |

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·날인한 후 각 1 통씩 보관한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매도인 : (서명 또는 인)  
매수인 : (서명 또는 인)

※ 본 서식은 참고용입니다. 등록이 필요한 물건이나 고액 거래는 관련 법령과 제출처 기준을 확인하십시오.